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2. 13.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3년 11월 9일

나. 발 의 자: 전승관 의원 외 3명

다. 회부일자: 2023년 11월 14일

라. 상정일자: 제249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2023. 11. 27.)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전승관 의원)

가. 제안이유

- 사회·경제·문화적 원인으로 일정 기간 이상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곤란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3조 ~ 제4조)
- 지원사업 및 은둔형 외톨이 발굴(안 제5조 ~ 제6조)
-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 제8조)

○ 비밀 준수의 의무 및 표창(안 제9조 ~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경진)

○ 본 조례안은

- 사회·경제·문화적 원인으로 일정 기간 이상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곤란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제명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이고 11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5조에서는 은둔형 외톨이의 발굴 및 상담, 관련 조사·연구, 교육 및 직업 훈련 등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 안 제6조에서는 은둔형 외톨이 발굴의 주체를 구 소속 공무원,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실태조사의 실시, 관련 통계 정보의 수집·관리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9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비밀 준수의 의무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서는 표창 및 시행규칙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검토 결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1년 고립·은둔 청년 현황과 지원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9~34세 청년 1077만6000명 가운데 고립 청년 수는 53만8000명(5%)으로 추산되며, 이는 직전 조사인 2019년 33만4000명(3%)보다 20만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은둔형 외톨이가 세계적인 팬데믹 코로나19 이후로 더욱 증가하였고, 최근 은둔형 외톨이에 의해 발생하는 강력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를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접근·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
- 이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가 다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9
------------	-----

발의연월일: 2023. 11. .

발 의 자: 전승관, 이성수, 이예찬

김지연 의원(4인)

1. 제안이유

사회·경제·문화적 원인으로 일정 기간 이상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곤란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3조 ~ 제4조)

라. 지원사업 및 은둔형 외톨이 발굴(안 제5조 ~ 제6조)

마.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 제8조)

바. 비밀 준수의 의무 및 표창(안 제9조 ~ 제10조)

3. 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사회보장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3. 8. 14.~ 8. 18.)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 원인 등으로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적응 촉진,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는 등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지원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의 발굴, 상담 및 일상생활 회복 지원
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연구
3.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4.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상담 및 활력 조성 프로그램
5. 은둔형 외톨이의 보호자·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6. 은둔형 외톨이 치유와 자립에 필요한 정보제공
7. 은둔형 외톨이 편견 예방을 위한 홍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은둔형 외톨이 발굴) 은둔형 외톨이 발굴의 주체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정책 및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의 실시 및 관련 통계 정보의 수집·관리를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을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